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18
----------	--------

제출년월일 : 2018. 11. 1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서 여성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해당 조항 정비

나. 양성평등기금 사용 범위 확대(안 제41조)

- 기금의 사용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안 제41조제2항)

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 명칭 변경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10. 11. ~ 10. 31. (제출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8. 11. 15.)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를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친화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 제목 “(여성친화 도시조성)”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6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생략)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 6.·7. (생략)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27조(여성친화 도시조성)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성별영향평가-----

- 6.·7.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여성친화도시 조성) ----

----- 성별영향평가----

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제36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

영향평가법」 제5조

성별영향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④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⑤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

제3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

----- 「지방회계법」 제18조-----

-----.

제39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 성별영향평가-----

-----.
② -----
-----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

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42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 위

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양성평등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범위를 '이자 수입금'으로 한정된 규정을 삭제하여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송강미
연 락 처	02-3153-8922